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폭염 장기화 및 기록적 폭우 등 이상기후 증가에 대응하여 배달 현장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상기후 발생 시 우편물 배달업무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, 기상상황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, 우편물 송달기준을 3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조정하여 송달여유일을 확보함으로써 이상기후 등 배달환경 악화 시 현장직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단서 중 “교통,”을 “교통, 기상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3일”을 “4일(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3일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우편물 송달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1군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리, 교통, 사업 환경 등이 열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	제12조(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- 교 <u>통, 기상 및</u>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(이하 “우편물 송달기준”이라 한다)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.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인 관할지역의 지리·교통상황·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 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4일(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3일)</u>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